

중요 재산 취득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사유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3. 주요골자

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의 여가 문화와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시급

나. 부산광역시의 1구 1노인복지관 확충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노인복지기반의 개선 및 형평성을 확보코자 대중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관 건립

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사업명	구분	소재지	면적(m ²)	구조	시설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하구 노인복지관	토지	계	543		노유자 시설	3,042
		괴정동284-4	444		▷프로그램실, 식당	
		괴정동284-6	99		▷상담실,물리치료실	
	건물	계	1,650		▷강당, 자원봉사실	
		괴정동284-1	1,650	철근콘크리트	▷주간보호실 ▷작은도서관,체력단련실	

4. 검토의견

본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은

-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여가문화와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 또한 부산광역시의 1구 1노인복지관 확충사업 추진과 연계한 노인복지기반의 개선 및 형평성 등을 확보코자 대중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부지 매입으로 생각되므로

위 승인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8. 11. 28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여기선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

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